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41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3항제1호)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사항
 -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3) 인권영향평가·위원회 운영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10. 2. ~ 10. 2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음.

○ 종합의견

- **안 제8조**에서는 현행 당연직 위원(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중 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1명 더 추가해 위원회 구성 정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¹⁾에 따르면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이 1/2이상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위 법률 및 지침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 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이 존

¹⁾ 출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행정안전부)

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까지인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동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區)는 2025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2025.10.22. 심의 완료)에서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으므로 적법한 입법 조치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심의일자 : 2025. 10. 22.(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안 건

- 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25.12.31. ⇒ '30.12.31.)
- 2) 특정업무경비(선택항목)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 3) 2026년 ~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총족 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총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총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참 고 자 료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42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나. 사업자 차별에 해당하는 “우선구매” 문구를 “구매”로 변경
(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별도 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10. 2. ~ 10. 22.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자 차별 규제 성격을 가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서 “우선구매” 문구를 “구매”로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관내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우선 구매 표현으로 인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문구 삭제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여겨짐.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리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지자체 합동 평가의 주요 평가 지표로 삼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조례의 경우 사업자 차별 규제로 보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로 들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세부내용】

【관련사례】

(00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 조례)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해당규정을 삭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2025.5.13.)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 다른 제품 및 사업자에게는 차별로 작용하여 경쟁 수단을 약화시키고 지역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어 “우선” 표현의 삭제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43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법령 체계 및 업종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카.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테마파크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기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3) 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2025. 10. 2. ~ 2025. 10. 2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업종 명칭이 변경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 종합의견

- 종전의 「관광진흥법」에서는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었음.
- 그러나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 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遊技)”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오락·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2025.8.28. 개정시행)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임.

참 고 자 료

1

관광진흥법(개정 전)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관광진흥법(개정 후)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